

## 이천시시세감면조례(안)

### 1. 주요 법적근거

- 지방세법 제7조(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)
  - 제1항 :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제2항 :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수 있다.
- 지방세법 제8조(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)  
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.
- 지방세법 제9조(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)  
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·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.
-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 
(시장재개발에 관한 특례)
  - 제1항 : 통상산업부 장관은 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에 속하거나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건축물이 소재한 시장중에서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의 추천을 받아 시장 재개발 대상지 역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건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2항 :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대상지역의 시장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안의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을 결의할 수 있다.
- 제3항 :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대상지역의 시장 재개발을 하는 동안 시장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 시장을 마련하는등 시장 재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.
- 제4항 : 시장재개발 대상지역의 선정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

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한 주택개량시 부속 토지 규정 개정과 재래 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지방세법 제7조에 “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수 있다”라고 규정되어 있고, 같은 법 제9조에는 “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·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”라고 되어 있는 바, 내무부 세 제 13400-434(96. 12. 30)호 및 경기 세정 13400-35(97. 2. 5)호에 의거 지방세 감면조례증 개정(안) 시달에 따른 등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일상생

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·개정·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가 있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